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통한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승인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에게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간 재직한 국가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10. ~ 5. 2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20조제18항을 제2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0항(종전의 제18항) 중 “제16항까지”를 “제16항까지, 제18항 및 제19항”으로 한다.

⑱ 행정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7일

⑲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제4호 중 “특별휴가”를 “특별휴가(제20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특별휴가) ① ~ ③ (생략)	제20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④ ----- ----- ----- ----- <u>.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u>
⑤ ~ ⑭ (생략)	⑤ ~ ⑭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⑮ 행정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7일
<u><신 설></u>	⑯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

⑮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1. ~ 3. (생략)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u>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u> ⑯ ----- ----- 제16항까지, 제18항 및 제19항----- ----- -----.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특별휴가 (제20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는 제외한다)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복무과	
연 락 처	(044) 201 - 8444